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9099

제출연월일: 2025. 3. 1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제1항제6호 중 "보건복지부령으로"를 "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	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
・도지사 및 시장・군수・구청	
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	
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	
봄서비스(이하"방과 후 돌봄서	
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	
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・운	
영할 수 있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<u>보건복지부령으로</u>	6 <u>해당 지방자치단체</u>
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	<u>의 조례로</u>
제공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